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1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가정책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순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표 개정 (안 제2조 및 별표 3)

- 정원의 총수 : 1,288명 ➡ 1,30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61명 ➡ 1,275명
- 일반직 총계 : 1,282명 ➡ 1,296명
 - 6급이하 소계 : 1,211명 ➡ 1,225명

※ 인력 확충 현황

구 분	계	사회복지직		세무직 (소득세 전환)	비 고
		사회복지확충	기초생활보장		
확충인원	14명	2명	6명	6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안전행정부) 및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 안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증원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6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14명을 증원함으로써,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88명에서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1명에서 1,275명으로 조정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 범위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의 2014년도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영등포구 총액인건비 1,024억 3,677만원 대비 96.8%인 991억 6,043만 4천원으로, 3.2%에 해당하는 32억 7,633만 6천원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붙임 총액인건비 기준 및 2014년도 세출총괄표 참조】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별첨】

총액인건비 기준 및 2014년도 세출총괄표

□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 근거 :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
- 현황
 - ▷ 2014년도 총액인건비 : 102,436,770천원
 - ▷ 총액인건비 기준 공무원수 : 1,289명 + 복지직 인력 22명
 - ▷ 우리구 공무원수 (2014.1) : 1,288명

□ 2014년 총액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세출예산서 69p 참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총계	99,160,434
101 인건비	81,271,740
101-01 보수	64,816,927
101-02 기타직보수	4,930,131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524,682
204 직무수행경비	2,280,121
204-02 직급보조비	2,280,121
303 포상금	3,764,475
303-02 성과상여금	3,764,475
304 연금부담금등	11,844,098
304-01 연금부담금	9,677,145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166,953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